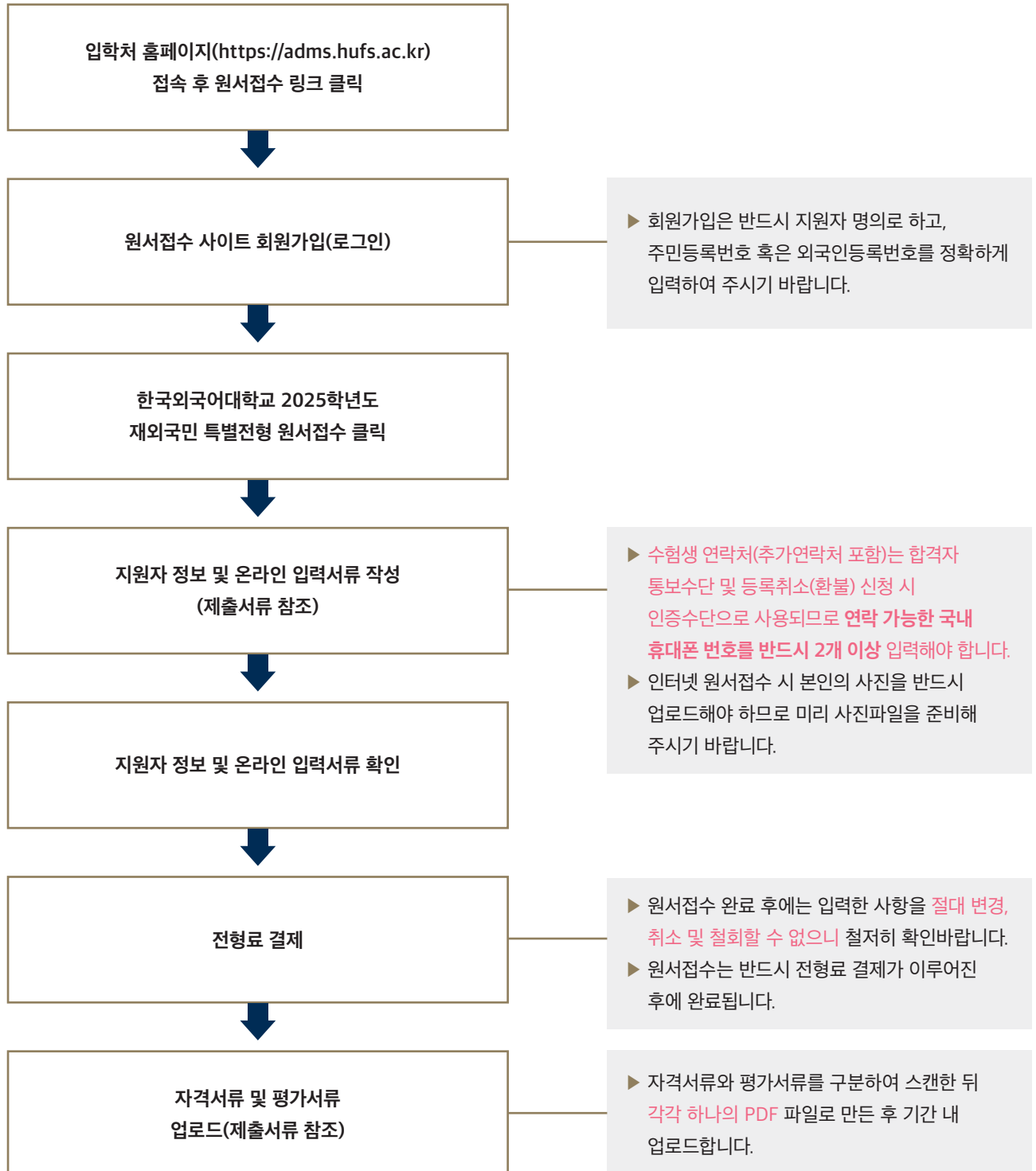


대입지원 유의사항

- 수시모집의 지원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수시모집에 해당하여 6회 산정 시 포함되므로 지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제외)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접수한 전형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접수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는 캠퍼스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반드시 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정시모집,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타 대학(교)에 이중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및 문서등록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대학(교)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신청 절차는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으로 지원을 권장합니다.
(예: 국외근무자 자녀이면서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으로 지원 권장)
- 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0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절차



0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캠퍼스	모집인원		비고
서울	50명		사범대학, KFL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 미선발
	어문/자연	25명	
	사회과학	25명	

캠퍼스	계열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최대선발 인원		
서울 캠퍼스 총 50 명 선 발	어문	영어대학	ELLT학과	52	5		
			영미문학·문화학과	52	5		
			영어통번역학과	45	4		
				영어대학[통합모집]		37	3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53	5	
				독일어과	64	6	
				노어과	34	3	
				스페인어과	64	6	
				이탈리아어과	23	2	
				포르투갈어과	23	2	
				네덜란드어과	23	2	
				스칸디나비아어과	23	2	
				핵심외국어계열	54	5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24	2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23	2	
				태국학과	23	2	
				베트남어과	23	2	
				인도어과	23	2	
				아랍어과	34	3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23	2	
				페르시아어·이란학과	23	2	
				몽골어과	21	2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24	2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21	2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42	4	
				중국외교통상학부	40	4	
				중국학대학[통합모집]	21	2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37	3		
			융합일본지역학부	27	2		
			일본학대학[통합모집]	16	1		
		사회과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8	3	
				행정학과	38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6	4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31	3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40	4	
				경제학부	62	6	
				상경대학[통합모집]	26	2	
			경영대학	130	13		
		사범 대학		영어교육과	27	미선발	
				한국어교육과	20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14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14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14		
		자연 사회과학	시용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49	4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49	4	
		사회과학		국제학부	29	2	
				Language & Diplomacy학부	33	3	
	Language & Trade학부			21	2		
		KFL학부	1	미선발			
		자유전공학부(서울)	100	미선발			

캠퍼스	모집인원		비고
글로벌	17명		자유전공학부(글로벌) 미선발
	인문	8명	
	자연	9명	

캠퍼스	계열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최대선발인원		
글로벌 캠퍼스 총 17명 선발	인문	인문대학	철학과	29	2		
			사학과	29	2		
			언어인지과학과	29	2		
		인문대학[통합모집]			21	2	
		국가전략 언어대학	폴란드학과	폴란드학과	26	2	
				루마니아학과	26	2	
				체코·슬로바키아학과	26	2	
				헝가리학과	26	2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26	2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3	2	
				중앙아시아학과	23	2	
				아프리카학부	38	3	
				우크라이나학과	20	2	
				한국학과	20	2	
		국가전략언어계열			52	5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54	5	
			국제금융학과		23	2	
		경상대학[통합모집]			19	1	
		자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과	29	2
					통계학과	29	2
	전자물리학과				29	2	
	환경학과				37	3	
	생명공학과				37	3	
	화학과				37	3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48	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80	8	
			정보통신공학과		37	3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38	3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37	3	
			산업경영공학과		37	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38	3			
	공과계열			67	6		
	인문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99	9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38	3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38	3	
			글로벌스포츠키오산업학부		38	3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통합모집]			30	3		
	자연	시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38	3	
	인문		Finance & AI융합학부		38	3	
	자연	시융합대학[통합모집]		20	2		
자연	기후변화융합학부		48	4			
인문	자유전공학부(글로벌)		224	미선발			

※ 202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으로 일부 학과(부), 세부전공,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원서접수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캠퍼스	모집인원	비고
서울	선발인원	사범대학 미선발
글로벌	제한없음	전 모집단위 선발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선발인원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선발인원					
서울 캠 퍼스	영어대학	ELLT학과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인문대학	철학과	제한 없음					
		영미문학·문화학과				사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언어인지과학과						
	영어대학[통합모집]							인문대학[통합모집]				
	서양어 대학	프랑스어학부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국가전략 언어대학	폴란드학과	제한 없음		
		독일어과							루마니아학과			
		노어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스페인어과							헝가리학과			
		이탈리아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포르투갈어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네덜란드어과							중앙아시아학과			
	스칸디나비아어과	아프리카학부										
	핵심외국어계열							국가전략언어계열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국제금융학과	국제금융학과	제한 없음		
		태국학과							경상대학[통합모집]			
		베트남어과									수학과	
		인도어과									통계학과	
		아랍어과									전자물리학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학과									환경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생명공학과	
	몽골어과	화학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제한 없음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통계학과			
		중국외교통상학부							전자물리학과			
	중국학대학[통합모집]								공과대학		환경학과	제한 없음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생명공학과	
		융합일본지역학부									화학	
	일본학대학[통합모집]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제한 없음		
		행정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공과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제한 없음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산업경영공학과							
	경제학부											
상경대학[통합모집]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경영대학	경영학부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공과계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미선발	글로벌 캠 퍼스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제한 없음				
	한국어교육과					Culture & Technology	디지털콘텐츠학부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융합대학	글로벌스포츠포스산업학부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통합모집]											
AI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제한 없음	글로벌 캠 퍼스	AI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제한 없음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KFL학부				AI융합대학[통합모집]								
자유전공학부(서울)				기후변화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 202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으로 일부 학과(부), 세부전공,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원서접수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대학·계열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선택 가능 학과(부)

캠퍼스	모집단위	선택 가능 학과(부)
서울	영어대학[통합모집]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영어통번역학과
	핵심외국어계열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학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아랍어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중국학대학[통합모집]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일본학대학[통합모집]	일본언어문화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경대학[통합모집]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	사범대학 각 학과(부), AI융합대학 각 학부, Language & Trade학부, KFL학부, 몽골어과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전 학과(부)
글로벌	인문대학[통합모집]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국가전략언어계열	폴란드학과, 루마니아학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헝가리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아프리카학부
	경상대학[통합모집]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국제금융학과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공과계열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통합모집]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타산업학부
	AI융합대학[통합모집]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우크라이나학과, 한국학과를 제외한 글로벌캠퍼스 전 학과(부)

0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4.07.08.(월) 10:00 ~ 07.10.(수) 17:00	-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s.hufs.ac.kr)
온라인 입력서류 작성	2024.07.08.(월) 10:00 ~ 07.11.(목) 17:00	- 기간 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단, 입학원서는 2024.07.10.(수) 17시까지 작성 가능) - 제출서류 참조
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업로드		- 대상: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각각 하나의 PDF 파일(총 2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참조
자격서류 업로드		- 대상: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자격서류를 스캔한 뒤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참조
면접질문 사전공개	2024.07.12.(금) 14:00	-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s.hufs.ac.kr)
면접영상 업로드	2024.07.15.(월) 10:00~ 07.17.(수) 17:00	- 대상: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캠퍼스 방문 불가 - 정해진 기간 내 면접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면접고사 결시로 인한 불합격 처리
최초합격자 발표	2024.09.02.(월)	-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s.hufs.ac.kr) - 개별 통지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4.12.16.(월) ~ 12.18.(수)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추가합격자 발표	~ 2024.12.26.(목) 18:00까지	- 대상: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일시: 2024.12.26.(목) 18:00까지 -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2024.12.27.(금) 15:00까지 - 차수별 추가합격자 발표/등록기간 및 홈페이지 발표/개별 전화통보 여부는 2024년 1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등록금 납부	2025.02.10.(월) 09:00 ~ 02.12.(수) 16:00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등 원본 제출	2025.02.28.(금)까지	- 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중 최종등록자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원본서류 표지를 부착한 뒤 입학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총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추가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추가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마감일까지 정해진 등록포기절차를 반드시 완료바랍니다.

04 지원자격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

- 1) 공통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2) 부모의 자격요건(국외 근무 및 실체류기간)

구분	대상	국외 근무 및 실체류기간 자격요건	
국외 근무자	부모	국외근무 기간	아래 3)의 지원자(학생)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근무 심사 시 심사대상기간 3년을 정한 후 해당 기간만 심사)
		실체류	심사대상기간 3년 중 부모 모두 매년 2/3 이상 현지 실체류

3) 지원자(학생)의 자격요건

구분	대상	국외 재학 및 실체류기간 자격요건	
국외 근무자의 자녀	지원자	재학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3개 학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실체류	위 재학기간 중 매년 3/4 이상 현지 실체류

-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교육·연수·출장·자발적 선교 또는 국외취업 목적의 외국 거주는 제외함)
-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 심사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성적증명서 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산정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구분	학력사항	한국어 인증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한국/외국국적)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	면제
북한이탈주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면제

- ※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자격은 학생의 부모 국적과 상관없음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 대학교 국제입학관리팀에서 별도 선발

05 자격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어야 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 안전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고 본 대학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나.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고등학교 졸업시점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소지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졸업예정자 포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한국외대의 학기 시작 시기인 3월 이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2)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태국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3)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초등학교: 1~6학년/중학교: 7~9학년/고등학교: 10~12학년)
- 4)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에 제3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도 인정합니다.
- 5) 외국 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의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6)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합니다.(단, 해당 학기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학하여야 함)
- 7) 외국고교 졸업 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합니다.
- 8)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정규과정과 동시에 이수한 경우는 학기로 인정할 수 있음)
- 9) 국가별 학년제의 차이로 인하여 총 이수기간이 12년 미만이나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에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0) 해당국의 교육 관계법령 상 편법 혹은 불법의 의도가 없는 범위에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1) 학제차이에 의한 학기의 중복/월반은 학교 이동 시 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12)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13) 검정고시, 홈스쿨링, 원격교육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본 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06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	반영비율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서류평가	서류평가점수 100%(200점)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면접고사 (온라인 면접영상 업로드)	면접고사점수 100%(200점)

※ 해당 전형 필수 서류 미제출자 및 면접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선발방법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서류 자격심사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서류평가 성적 순위에 따라 각 캠퍼스 계열별 모집인원만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평가방법: 2인의 평가자가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측면에서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평가항목	
학업역량	30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50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공동체역량	20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성과 규칙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 동점자는 아래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아래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도 성적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① 진로역량 성적 우수자 → ② 학업역량 성적 우수자 → ③ 공동체역량 성적 우수자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수학 능력 기준에 미달이 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면접평가 및 자격심사를 통해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지원자격과 수학능력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적정인원을 선발합니다.

07 제출서류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4.07.10.(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초·중·고 재학한 모든 학교와 기간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동기가 서명을 대체 (필요시 별도 서명본을 요구할 수 있음)
3 외국학교조사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2024.07.11.(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4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	- 국문으로 작성 - 2024.07.11.(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2. 자격서류 (5~16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5 초·중·고 재학증명서	○	-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6 초·중·고 성적증명서	○	- 1페이지짜리 Transcript 혹은 학년별 School Report 형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시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8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 모든 학년에 대한 학사일정표 필수 제출 -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가능 - 필요시 초등학교 학사일정표를 추가제출 요청할 수 있음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해당자에 한해 혼인관계, 입양사실 관련서류 추가제출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2024.06.03.(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0 보호자 특정목적증빙서류	○	- 국외 파견근무자: 국내 본사에서 발급한 파견국가와 파견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서 → 영사확인필 - 현직법인 근무자: 법인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법인세납부이력 또는 개인소득세 증명 → 영사확인필
11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모두 제출 - 학생의 초등 6학년 재학 시작일부터 고교 졸업시점까지 출입국 기록 제출(부,모,학생 모두) - 2024.06.03.(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2 여권 사본(부, 모, 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 모두 제출
13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14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참조
15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부, 모)	○	
16 사유서	해당자	
3. 평가서류 (17~18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평가서류에 업로드)		
17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	-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은 2024.07.25.(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제출서류 양식 참조
1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의 경우 <u>자격서류와 평가서류에 각각 중복 업로드 필요</u>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4.07.10.(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초·중·고 재학한 모든 학교와 기간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3 외국학교조사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동의가 서명을 대체 (필요시 별도 서명본을 요구할 수 있음) - 2024.07.11.(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2. 자격서류 (4~11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4 초·중·고 재학증명서	○	-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5 초·중·고 성적증명서	○	- 1페이지짜리 Transcript 혹은 학년별 School Report 형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시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7 학사일정표	○	- 학사일정표는 초,중,고 모든 학년 필수 제출 -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가능
8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모두 제출 - 학생의 출생일부터 고교 졸업시점까지 출입국 기록 제출 - 2024.06.03.(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9 여권 사본(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 모두 제출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11 사유서	해당자	- 제출서류 양식 참조

다. 북한이탈주민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4.07.10.(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자격서류 (2~3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급
3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가능 - 시·도 교육청 발급

라. 서류제출 공통사항

-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의 경우,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각각 하나의 PDF 파일(총 2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합니다.
-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격서류를 스캔한 뒤 하나의 PDF 파일(총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합니다.
- 3)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업로드하지 못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합격자 중 최종등록자는 2025.02.28.(금)까지 스캔하여 업로드하였던 모든 원본서류(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일체)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5)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6)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5.02.28.(금)까지 원본서류와 함께 최종졸업증명서, 최종성적증명서, 최종재직서류, 최종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지원자가 재학한 학교의 소재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및 고교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한 재외국민은 해당 교육기관 발급서류에 한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제출 가능
- ※ 중국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서울공자아카데미(<http://renew.kongzi.co.kr>, 02-554-2688)에서 중국 중·고등학교 관련 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본 대학교에 제출 가능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 제출대상자: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 제출 관련 서류: 국외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성적·졸업증명서) 등
- 제출방법: 국외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최종등록자는 2025.02.28.(금)까지 업로드한 서류를 원본으로 교제함과 동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또는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

- 문의처: 외교부 02-2002-0251, 025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쿡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최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은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참조

- 8)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자녀가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근무)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속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해당 기간은 재외국민 자격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제출 후 인정 여부 심사 예정)
- 9)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기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시된 서류(등록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1) 국외근무자의 재직증명서에는 파견(근무) 국가와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12)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 대상자는 재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02-3415-0173)
- 13)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14) 지원자격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활동보고서 증빙서류로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2024.07.25.(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 16) Score Reporting 방식에 의한 활동증빙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17) 활동보고서 증빙서류로 추천서는 제출하실 수 없으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0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자	비고
최초합격자 발표	2024.09.02.(월)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4.12.16.(월) ~ 12.18.(수)	

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에 한해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 2024.12.26.(목) 18:00까지
 - 자세한 차수별 추가합격자 발표 방식 및 등록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선발방식 특성상 예비번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추가합격을 할 수 있으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추가합격자 발표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언제든지 신속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며, 가급적 국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미기재 또는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전화충원 노력(최대 3회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은 추가합격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후 등록포기” 처리합니다.(정시모집,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 불가) 그러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하기 바랍니다. 국외 출국의 경우 전형 일정 및 안내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처로 통보해야 합니다. [☎ 02-2173-2500/(ARS 1번)]

다. 등록포기 및 환불

-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하며, 합격포기 및 등록 포기 요청 방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본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수시모집 대학에 복수 지원하여 합격한 자 및 추가합격한 자가 본 대학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4.12.26.(목) 13:00까지** 입학처로 연락하여 등록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02-2173-2500/(ARS 1번)]
-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포기 및 환불의 인증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추가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마감일까지 정해진 등록 포기 절차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09 전형료

가. 전형별 전형료

구분	전형료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50,000원
북한이탈주민	50,000원

나. 전형료 감면

- 1) 감면대상: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제출서류: 서류는 **2024.06.17.(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료 감면 신청서(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단,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 전형료 감면 신청서(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발급)

- 3) 제출기간: 2024.07.08.(월) 10:00 ~ 07.11.(목) 17:00
 - 4) 제출방법: 모든 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전형료 감면서류에 업로드하고,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제출 불가)해야 합니다.(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야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 ※ 주소: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2호 입학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 5) 감면처리방법: 전형별 전형료를 정상 결제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입력했던 계좌로 일괄 지급 예정(9월 중 예정)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 유의사항

- 1) 결제가 완료되어 접수(수험번호 생성)된 입학원서 및 전형관련서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 기재사항을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형료 환불규정 안내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된 입학원서는 철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및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진행이 불가능함을 사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형일자 사후 변경 등)

환불신청시기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시점 이전	전형료 100%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마감일 포함) 3일 이내	전형료 50%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마감일 포함) 4일부터 전형 1일 이전	전형료 20% 반환
전형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별도 고사가 없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2)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 지원자는 캠퍼스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4)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5)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형료 환불계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집니다.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입력하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가능합니다.
- 6)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 지원자격 충족여부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본 대학교에서 정한 수학 능력 기준에 미달이 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없습니다.
- 8)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9)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신입생 입학절차와 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 따릅니다.
- 10) 자격조건 충족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1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 대학교 국제입학관리팀에서 별도 일정에 따라 선발합니다. (국제입학관리팀 ☎ 02-2173-2065, 2657 /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hufs.ac.kr>)
- 12) 제출한 전형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작성요령

-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구분에 본인의 지원자격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작성 시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에 속하면서 중·고교 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에도 속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으로 지원 권장)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공통원서 작성시 외국인등록번호유무에 '무' 를 선택하신 후 생년월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됩니다.
- 접수된 입학원서는 지원사실 철회 및 지원모집단위 변경 등의 **수정 및 취소가 일체 불가능하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및 외국학교 조사표 작성요령

-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에서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연도순)으로 입력하며, 재학기간은 반드시 연월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 학력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교 조사표는 외국 재학학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학력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지원서류 제출

-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각각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합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2025.02.28.(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합격한 후 반드시 최종증명서를 **2025.02.28.(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원본서류 제출방법은 추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입학팀 02-2173-2500(ARS 1번) 또는 adms@hufs.ac.kr

11 제출서류 양식

※ 본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활동보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지원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학과(부)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 활동보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간 내 작성해야 하며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 기간 : 2024.07.08.(월) 10:00 ~ 07.11.(목) 17:00
- 고등학교 재학 기간(고 1~3학년/10~12학년)의 활동 내역만을 기재하며, 그 외 기간의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활동보고서는 총 12개의 활동에 대해 주요 내용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활동증빙서류는 A4 단면으로 20매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활동증빙서류가 20매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활동증빙서류 번역 공증은 총 20매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A4보다 큰 서류의 경우 A4 규격에 맞추어 축소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 활동증빙서류는 활동보고서에 작성한 번호 순서대로 스캔합니다.
- 비문서 형태(CD, DVD, 책, 메달, 트로피 등)로는 제출 불가합니다.
- SAT, TOEFL 등과 같은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사실 검증을 위해 활동보고서와 제출하신 활동증빙서류 하단에 반드시 웹사이트 주소, ID, PW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외부 성적표의 경우, 2024.07.25.(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Score Reporting 방식에 의한 활동증빙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활동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활동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활동증빙서류 제목과 기관명에 한해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제출하실 수 없으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활동보고서 및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 본인은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본인은 제출한 활동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 ▶ 제출된 활동보고서 및 활동증빙서류 내용 중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 :)
- ▶ 제출된 활동증빙서류에 관한 정보 열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의 :)

활동보고서

연번	활동증빙서류 제목	주요 내용	기관명, 홈페이지, ID, PW
1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2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3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4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5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6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7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8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9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0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1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2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상기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만을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유서

전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학과(부)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사유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 해당 사유에 알맞게 체크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결손 및 중복은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유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업로드)합니다.
-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유	<input type="checkbox"/> 학기결손	<input type="checkbox"/> 학기중복	<input type="checkbox"/> 월반	해당학교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수업	<input type="checkbox"/> 조기졸업	<input type="checkbox"/> 국내체류	해당학년/학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정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	-----------------------------

용도 (Purpose)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
--------------	---------------------------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